|  |  |  |
| --- | --- | --- |
| **직업병 진단 및 감정 관리방법**  위생부 령 제91호  《직업병 진단 및 감정 관리방법》이 2013년 1월 9일의 위생부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천주(陳竺)  2013년 2월 19일  **제1장 총 칙**  **제1조** 직업병 진단과 감정 업무를 규율하고 직업병 진단과 감정 관리를 보강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퇴치법》(이하 《직업병 퇴치법》이라 함)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직업병 진단과 감정업무는 《직업병 퇴치법》, 이 방법의 관련 규정, 그리고 국가의 직업병 진단표준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아울러 과학, 공정, 시의적절, 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직업병 진단기구의 설치는 반드시 직업병 퇴치업무의 실제 수요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존의 의료위생자원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구역의 전면커버를 실현하여야 한다.  **제4조** 각 지역에서는 직업병 진단기구의 능력건설을 보강하여 필요한 보장조건을 제공하고 유관인원, 장비 및 업무경비를 설정함으로써 직업병 진단업무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제2장 진단기구**  **제5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이하 성급 위생행정부서라 함)는 본 행정구역의 직업병 퇴치업무 실제에 따라 직업병 진단기구 설치계획을 제정하여 성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얻은 후 실시한다.  **제6조** 직업병 진단기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의료기구 직업종사허가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상응하는 진료항목 및 직업병 진단 실시에 필요한 직업병 진단의사 등 관련 의료 위생기술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직업병 진단에 필요한 장소와 계기,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건전한 직업병 진단 질 관리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의료위생기구에서 직업병 진단업무를 전개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성급 위생행정부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병 진단기구 신청표  (2) 《의료기구 직업종사허가증》 및 부본의 복사본  (3) 직업병 진단항목 전개와 관련되는 진료항목 및 관련 서류  (4) 신청항목과 상응하는 직업병 진단의사 등 유관 의료위생인원 상황  (5) 신청항목에 필요한 장소와 계기, 장비리스트  (6) 직업병 진단 관리제도 관련 서류  (7) 성급 위생행정부서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한 기타 서류.  **제8조** 성급 위생행정부서에서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5일 근무일 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신청단위에 통지하여야 한다.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성급 위생행정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기술평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가팀은 위생행정부서에서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기술평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제출한 기술평의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 성급 위생행정부서에서는 기술평의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비준한 신청단위에는 직업병 진단기구 비준증서를 발급하며,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신청단위에 통지한다.  직업병 진단기구 비준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0조** 직업병 진단기구에서 법에 따라 취득한 직업병 진단기구 비준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비준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0일 전에 원 비준기관에 연기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원 비준기관의 심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비준증서를 연기할 수 있다.  **제11조** 이 방법 제6조에서 규정한 공립 의료위생기구에서는 직업병 진단업무를 신청할 수 있다.  구를 설치한 시에서 직업병 진단을 신청한 의료위생기구가 없는 경우 성급 위생행정부서에서는 직업병 진단업무의 필요에 따라 공립 의료위생기구를 지정하여 직업병 진단업무를 전개하도록 하며, 동시에 규정한 기간 내에 이 방법 제6조 조건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직업병 진단기구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비준한 직업병 진단항목 범위 내에서 직업병 진단업무 전개  (2) 직업병 보고  (3) 직업병 진단업무 상황 보고  (4) 《직업병 퇴치법》에서 규정한 기타 직책 수행.  **제13조** 직업병 진단기구에서는 법에 따라 진단 권한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동시에 그 직업병 진단결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직업병 진단기구에서는 직업병 진단관리 제도를 구축 및 건전히 하고 직업병 진단의사 등 유관 의료위생인원 기술양성과 정책, 법률교육을 강화함과 아울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직업병 진단업무 조건을 개선하고 직업병 진단 서비스 질과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직업병 진단기구에서는 직업병 진단절차를 공개하여 노동자의 직업병 진단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직업병 진단기구 및 유관 업무직원은 노동자를 존중시하고 관심하고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16조** 직업병 진단에 종사하는 의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성급 위생행정부서에서 발급한 직업병진단 자격증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1) 의사 직업증서를 취득  (2) 중급 이상 위생 전문기술직무 임직자격 구비  (3) 직업병 퇴치 법률, 법규 및 직업병 진단기준을 숙지  (4) 직업병 진단, 감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  (5) 규정에 따라 직업병 진단의사의 상응하는 전문교육을 받고 심사에 합격.  **제17조** 직업병 진단의사는 법에 따라 그 자격범위 내에서 직업병 진단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그 자격범위를 벗어나서 직업병 진단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성급 위생행정부서에서는 사회에 본 행정구역내의 직업병 진단기구 명단, 주소, 진단항목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진 단**  **제19조** 노동자는 사용단위 소재지, 본인의 호적소재지 또는 일상 거주지의 직업병 진단기구에서 직업병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 직업병 진단기구에서는 《직업병 퇴치법》, 이 방법의 관련 규정과 국가의 직업병 진단표준에 따르고 노동자의 직업경력, 직업병 위해 접촉경력 및 업무장소 직업병 위해요소 상황, 임상표현 및 보조검사결과 등에 의거하여 종합분석을 실시하여 진단결론을 내려야 한다.  **제21조** 직업병 진단에는 아래의 자료들이 필요하다.  (1) 노동자 직업경력과 직업병 위해 접촉경력(재직기간, 직종, 직위, 접촉한 직업병 위해요소명칭 포함)  (2) 노동자의 직업병 건강검진 결과  (3) 업무장소 직업병 위해요소 테스트결과  (4) 직업 성격의 방사성 질병진단은 개인의 사용량 검측기록(档案) 등 자료 필요  (5) 진단과 관련되는 기타 자료.  **제22조** 노동자가 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직업병 진단기구에서는 그 신청을 수리하여야 하며, 동시에 노동자에게 직업병 진단 절차와 그에 필요한 서류를 고지하여야 한다. 노동자는 《직업병 진단 진료등기표》를 작성하고 그가 갖고 있는, 이 방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직업병 진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노동자 직업경력, 직업병 위해 접촉경력을 확인할 때 당사자가 노동관계, 직종, 업무직위 또는 재직기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직업병 진단기구는 사용단위 소재지의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직업병 진단기구에서 직업병 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노동자 소재지의 사용단위에 통지하여 그가 갖고 있는, 이 방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직업병 진단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단위에서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여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5조** 사용단위에서 규정한 시간 내에 직업병 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직업병 진단기구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사용단위에서 제공하도록 독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노동자가 사용단위에서 제공한 업무장소 직업병 위해요소 테스트결과 등 자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노동자의 사용단위 해산, 파산 등으로 인해 사용단위에서 상술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직업병 진단기구에서는 법에 따라 사용단위 소재지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조사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직업병 진단기구에서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서 조사결론 또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직업병 진단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직업병 진단기구에서 업무장소 직업병 위해요소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장소 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서 독촉하여도 사용단위에서 여전히 직업장소 직업병 위해요소 검측결과, 직업건강 감호서류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자료가 완비하지 않을 경우 직업병 진단기구에서는 노동자의 임상표현, 보조검사결과 및 노동자의 직업경력, 직업병 위해 접촉경력에 결부하고 또한 노동자의 진술,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서 제공한 일상 감독검사정도 등을 참조하여 직업병 진단결론을 내리며, 그래도 직업병 진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의학의견이나 건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직업병 진단기구에서 직업병 진단을 내릴 때에는 3명 이상 홀수의 직업병 진단의사가 공동으로 진단을 하여야 한다.  직업병 진단의사는 독립분석과 판단에 의해 진단의견을 제출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에 간여할 수 없다.  **제30조** 직업병 진단기구에서 직업병 진단을 실시할 때 진단의사가 진단결론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수 이상 진단의사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진단결론을 형성하여야 하며, 부동한 의견은 여실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진단에 참여한 직업병 진단의사는 기권을 할 수 없다.  **제31조** 직업병 진단기구에서는 진단의 필요에 따라 기타 단위의 직업병 진단의사를 초청하여 진단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2조** 직업병 진단기구에서 직업병 진단결론을 내린 후에는 직업병 진단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직업병 진단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자, 사용단위의 기본정보  (2) 진단결론. 직업병으로 확진된 경우에는 직업병 명칭, 정도(오차), 처리의견 명기  (3) 진단일자.  직업병 진단증명서에는 진단에 참여한 의사가 공동 서명하고 직업병 진단기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직업병 진단증명서는 1식 3부로서 노동자, 사용단위에서 각 1부씩 소지하고 진단기구에서 1부를 보관한다.  직업병 진단증명서의 서식은 위생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제33조** 직업병 진단기구에서는 직업병 진단 보관서류를 구축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보관서류에는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병 진단증명서  (2) 직업병 진단과정 기록, 여기에는 진단 참여자, 시간, 장소, 토론내용 및 진단결과 포함  (3) 사용단위, 노동자 및 유관부서, 기구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  (4) 임상검사 및 실험실 검사 등 자료  (5) 진단과 관련되는 기타 자료.  **제34조** 직업병 진단기구에서 직업병 환자 또는 직업병 의심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재지 위생행정부서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직업병으로 확진된 경우 직업병 진단기구에서는 필요에 따라 유관 감독부서, 사용단위에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35조** 직업병 진단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의료위생기구에서 진료 활동 중 노동자의 건강손해가 그가 종사하는 직업과 관련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업병 진단기구에 가서 직업병 진단을 받도록 노동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장 감 정**  **제36조** 당사자가 직업병 진단기구의 직업병 진단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업병 진단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직업병 진단기구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위생행정부서에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구를 설치한 시급 직업병 진단감정위원회에서는 직업병 진단분쟁의 최초 감정을 책임지고 실시한다.  당사자가 구를 설치한 시급 직업병 감정결론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원 감정기구 소재지의 성급 위생행정부서에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직업병 감정은 2급 감정제도를 실시하며, 성급 직업병 감정결론은 마지막 감정으로 된다.  **제37조** 위생행정부서에서는 사무기구를 지명하여 직업병 감정의 조직과 일사적인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직업병 감정 사무기구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의 신청 접수  (2) 당사자를 조직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위탁을 받고 직업병 감정 전문가를 지명  (3) 직업병 감정회의를 주최하고 회의기록, 직업병 감정 관련문서의 수신과 발송 및 기타 사무적인 업무를 처리  (4) 직업병 감정 보관서류를 구축 및 관리  (5) 위생행정부서에서 위탁한 직업병 감정과 관련되는 기타 업무를 처리.  직업병 진단기구는 직업병 감정 사무기구로 될 수 없다.  **제38조**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위생행정부서에서는 사회에 본 행정구역 내에서 법에 따라 직업병 감정 업무를 감당한 사무기구의 명칭, 업무시간, 장소 및 감정 업무절차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9조** 성급 위생행정부서에서는 직업병 감정 전문가뱅크(이하 전문가뱅크라 함)를 구축하여야 하며, 아울러 실제 업무 수요에 따라 그 구성원을 시의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전문가뱅크는 전공에 따라 팀을 나눌 수 있다.  **제40조** 전문가뱅크는 각종 직업병 진단자격을 취득한 의사를 주요 구성원으로 하고 임상 관련 학과, 직업위생, 방사성위생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문가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양호한 업무소양과 직업윤리 구비  (2) 관련 분야의 고급 전문기술직무 임직자격 취득  (3) 직업병 퇴치법률, 법규 및 직업병 진단기준 숙지  (4) 신체가 건강하고 직업병 감정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  **제41조** 직업병 감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감정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위탁한 직업병 감정 사무기구에서 전문가뱅크 중에서 분야별로 무작위추출 방식을 취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선정한 전문가는 직업병 감정전문가팀(이하 전문가팀이라 함)을 구성한다.  직업병감정 사무기구에서는 감정의 필요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본 성, 자치구, 직할시 이외의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가로 참여시켜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전문가팀 수는 5인 이상 홀수여야 하며, 그중 관련 분야 직업병 진단의사는 그 전문가팀의 과반수여야 한다. 판단하기 어려운 케이스는 전문가 수를 증가하여 의견을 충분하게 청취하여야 한다. 전문가팀은 팀장 1명을 두며, 전문가팀 구성원의 추대에 의해 산생한다.  직업병 감정회의는 전문가팀 팀장이 주재한다.  **제43조** 직업병 감정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아래와 같은 사정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기피하여야 한다.  (1) 직업병 감정 당사자나 당사자의 근친족인 경우  (2) 이미 당사자의 직업병 진단 또는 처음 진단에 참여한 경우  (3) 직업병 감정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직업병 감정 당사자와 기타 관계가 존재하여 감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44조** 당사자가 직업병 감정을 신청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병 감정신청서  (2) 직업병 감정증명서, 성급 감정을 신청 시에는 시급 직업병 감정서를 별도 제출  (3) 위생행정부서에서 제출하도록 요구한 기타 관련 자료.  **제45조** 직업병 감정 사무기구에서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서류 심사를 완료하고 서류가 완비한 경우 수리통지서를 발급하며, 서류가 완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를 보완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보완 서류가 완비한 경우에는 신청을 수리하고 감정을 조직하여야 한다.  직업병 감정 사무기구에서는 당사자의 감정 신청을 접수한 후 필요에 따라 원 직업병 진단기구 또는 최초 직업병 감정을 실시한 사무기구로부터 진단, 감정 관련 자료를 받아서 열람할 수 있다. 원 직업병 진단기구 또는 최초 직업병 감정 사무기구에서는 통지를 받은 15일 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직업병 감정 사무기구에서는 감정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감정을 조직하고 감정결론을 형성하여야 하며, 아울러 감정결론 형성 후 15일 내에 직업병 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6조** 직업병 감정 업무의 필요에 따라 직업병 감정 사무기구에서는 유관단위로부터 직업병 진단, 감정 관련 자료를 받아서 열람할 수 있으며, 유관단위에서는 지체 없이 여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가팀은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의학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정대상자의 업무장소 직업병 위해요소 상황 파악이 필요한 경우 직업병 감정 사무기구에서는 전문가팀의 의견에 따라 업무장소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의법 현장조사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결론 또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직업병 감정을 정지하여야 한다.  직업병 감정은 객관, 공정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전문가팀에서 직업병 감정을 실시 시 유관단위 인원을 초청하여 직업병 감정회의를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직업병 감정에 참여한 모든 인원은 감정대상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47조** 전문가팀은 감정서류를 열심히 심사하고 관련 규정과 직업병 진단기준에 따라 충분하게 합의한 후 전문지식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실이 분명한 토대에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감정결론을 내리고 감정서를 제작한다.  감정결론은 전문가팀 2/3 이상의 구성원에 의해 통과되어야 한다.  **제48조** 직업병 감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자, 사용단위의 기본정보와 감정 내용  (2) 감정결론 및 그 의거. 직업병인 경우에는 직업병 명칭, 정도(오차)를 명기  (3) 감정일자.  감정서에는 직업병진단감정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한다.  처음 감정한 직업병 감정서는 1식 4부로서 노동자, 사용단위, 원 진단기구에서 각 1부씩 소지하고 직업병감정 사무기구에서 1부 보관한다. 재감정 직업병 감정서는 1식 5부로서 노동자, 사용단위, 원 진단기구, 최초 직업병감정 사무기구에서 각 1부씩 소지하고 재차 직업병감정 사무기구에서 1부 보관한다.  직업병 감정서의 서식은 위생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제49조** 직업병감정 사무기구에서는 감정결론을 내린 날로부터 20일 내에 직업병 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0조** 감정결론이 진단결론 또는 최초 감정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직업병감정 사무기구에서는 지체 없이 유관 위생행정부서와 안전생산감독과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 직업병감정 사무기구에서는 직업병감정 과정을 여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가팀의 구성  (2) 감정일자  (3) 감정에 사용한 자료  (4) 감정 전문가의 발언 및 그 감정의견  (5) 표결상황  (6) 감정 전문가의 서명을 받은 감정결론  (7) 감정과 관련되는 기타 자료.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여실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감정 완료 후 감정기록은 직업병 감정서와 함께 직업병감정 사무기구에서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관리**  **제52조** 현급 이상 지방 위생행정부서에서는 직업병 진단기구 연도 감독검사계획을 제정하여 정기적으로 직업병진단기구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률, 법규 및 표준의 집행상황  (2) 규장제도 제정 상황  (3) 인원배치, 직무직책 실행 및 교육 등 상황  (4) 직업병 보고상황 등.  성급 위생행정부서에서는 매년 최소 1회의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를 설치한 시급 위생행정부서에서는 매년 최소 1회의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비정기 표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급 위생행정부서는 일상적 감독검사를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53조**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지방위생행정부서에서는 직업병감정 사무기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직업병감정 업무절차, 제도 시행상황 및 직업병보고서 등 관련 업무상황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4조** 성급 위생행정부서에서는 직업병진단기구에 대한 정기 검정을 실시한다.  **제6장 법률적 책임**  **제55조** 의료위생기구에서 비준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직업병 진단에 종사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위생행정부서에서 《직업병 퇴치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6조** 직업병진단기구에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위생행정부서에서 《직업병 퇴치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비준범위를 벗어나서 직업병 진단에 종사한 경우  (2) 《직업병 퇴치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법정직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 허위 증명문건을 발급한 경우.  **제57조** 직업병진단기구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직업병, 직업병 의심케이스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위생행정부서에서 《직업병 퇴치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8조** 직업병진단기구에서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위생행정부서에서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동시에 사정에 비추어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킨다.  (1) 직업병 진단관리 제도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  (2) 규정한 바에 따라 노동자에게 직업병 진단절차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3) 노동자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정보, 자료를 누설한 경우  (4) 이 방법을 위반한 기타의 행위.  **제59조** 직업병 진단감정위원회 구성원이 직업병진단 분쟁 당사자의 재물이나 기타 뇌물을 받은 경우 성급 위생행정부서에서 《직업병 퇴치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0조** 현급 이상 지방위생행정부서 및 그 업무직원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직업병 퇴치법》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장 부 칙**  **제61조** 직업병 진단, 감정 비용은 사용단위에서 부담한다.  **제62조** 이 방법은 위생부에서 해석한다.  **제63조** 이 방법은 201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002년 3월 28일 위생부에서 반포한 《직업병 진단 및 감정 관리방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 |  | **职业病诊断与鉴定管理办法**  卫生部令第91号  《职业病诊断与鉴定管理办法》已于2013年1月9日经卫生部部务会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3年4月10日起施行。  部 长 陈 竺  2013年2月19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职业病诊断与鉴定工作，加强职业病诊断与鉴定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以下简称《职业病防治法》），制定本办法。  **第二条** 职业病诊断与鉴定工作应当按照《职业病防治法》、本办法的有关规定及国家职业病诊断标准进行，遵循科学、公正、及时、便民的原则。  **第三条** 职业病诊断机构的设置必须适应职业病防治工作实际需要，充分利用现有医疗卫生资源，实现区域覆盖。  **第四条** 各地要加强职业病诊断机构能力建设，提供必要的保障条件，配备相关的人员、设备和工作经费，以满足职业病诊断工作的需要。  **第二章 诊断机构**  **第五条**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以下简称省级卫生行政部门）应当结合本行政区域职业病防治工作制定职业病诊断机构设置规划，报省级人民政府批准后实施。  **第六条** 职业病诊断机构应当具备下列条件：  （一）持有《医疗机构执业许可证》；  （二）具有相应的诊疗科目及与开展职业病诊断相适应的职业病诊断医师等相关医疗卫生技术人员；  （三）具有与开展职业病诊断相适应的场所和仪器、设备；  （四）具有健全的职业病诊断质量管理制度。  **第七条** 医疗卫生机构申请开展职业病诊断，应当向省级卫生行政部门提交以下资料：  （一）职业病诊断机构申请表；  （二）《医疗机构执业许可证》及副本的复印件；  （三）与申请开展的职业病诊断项目相关的诊疗科目及相关资料；  （四）与申请项目相适应的职业病诊断医师等相关医疗卫生技术人员情况；  （五）与申请项目相适应的场所和仪器、设备清单；  （六）职业病诊断质量管理制度有关资料；  （七）省级卫生行政部门规定提交的其他资料。  **第八条** 省级卫生行政部门收到申请材料后，应当在五个工作日内作出是否受理的决定，不受理的应当说明理由并书面通知申请单位。  决定受理的，省级卫生行政部门应当及时组织专家组进行技术评审。专家组应当自卫生行政部门受理申请之日起六十日内完成和提交技术评审报告，并对提交的技术评审报告负责。  **第九条** 省级卫生行政部门应当自收到技术评审报告之日起二十个工作日内，作出是否批准的决定。  对批准的申请单位颁发职业病诊断机构批准证书；不批准的应当说明理由并书面通知申请单位。  职业病诊断机构批准证书有效期为五年。  **第十条** 职业病诊断机构需要延续依法取得的职业病诊断机构批准证书有效期的，应当在批准证书有效期届满三十日前，向原批准机关申请延续。经原批准机关审核合格的，延续批准证书。  **第十一条** 符合本办法第六条规定的公立医疗卫生机构可以申请开展职业病诊断工作。  设区的市没有医疗卫生机构申请开展职业病诊断的，省级卫生行政部门应当根据职业病诊断工作的需要，指定公立医疗卫生机构承担职业病诊断工作，并使其在规定时间内达到本办法第六条规定的条件。  **第十二条** 职业病诊断机构的职责是：  （一）在批准的职业病诊断项目范围内开展职业病诊断；  （二）报告职业病；  （三）报告职业病诊断工作情况；  （四）承担《职业病防治法》中规定的其他职责。  **第十三条** 职业病诊断机构依法独立行使诊断权，并对其作出的职业病诊断结论负责。  **第十四条** 职业病诊断机构应当建立和健全职业病诊断管理制度，加强职业病诊断医师等有关医疗卫生人员技术培训和政策、法律培训，并采取措施改善职业病诊断工作条件，提高职业病诊断服务质量和水平。  **第十五条** 职业病诊断机构应当公开职业病诊断程序，方便劳动者进行职业病诊断。  职业病诊断机构及其相关工作人员应当尊重、关心、爱护劳动者，保护劳动者的隐私。  **第十六条** 从事职业病诊断的医师应当具备下列条件，并取得省级卫生行政部门颁发的职业病诊断资格证书：  （一）具有医师执业证书；  （二）具有中级以上卫生专业技术职务任职资格；  （三）熟悉职业病防治法律法规和职业病诊断标准；  （四）从事职业病诊断、鉴定相关工作三年以上；  （五）按规定参加职业病诊断医师相应专业的培训，并考核合格。  **第十七条** 职业病诊断医师应当依法在其资质范围内从事职业病诊断工作，不得从事超出其资质范围的职业病诊断工作。  **第十八条** 省级卫生行政部门应当向社会公布本行政区域内职业病诊断机构名单、地址、诊断项目等相关信息。  **第三章 诊 断**  **第十九条** 劳动者可以选择用人单位所在地、本人户籍所在地或者经常居住地的职业病诊断机构进行职业病诊断。  **第二十条** 职业病诊断机构应当按照《职业病防治法》、本办法的有关规定和国家职业病诊断标准，依据劳动者的职业史、职业病危害接触史和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情况、临床表现以及辅助检查结果等，进行综合分析，作出诊断结论。  **第二十一条** 职业病诊断需要以下资料：  （一）劳动者职业史和职业病危害接触史（包括在岗时间、工种、岗位、接触的职业病危害因素名称等）；  （二）劳动者职业健康检查结果；  （三）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检测结果；  （四）职业性放射性疾病诊断还需要个人剂量监测档案等资料；  （五）与诊断有关的其他资料。  **第二十二条** 劳动者依法要求进行职业病诊断的，职业病诊断机构应当接诊，并告知劳动者职业病诊断的程序和所需材料。劳动者应当填写《职业病诊断就诊登记表》，并提交其掌握的本办法第二十一条规定的职业病诊断资料。  **第二十三条** 在确认劳动者职业史、职业病危害接触史时，当事人对劳动关系、工种、工作岗位或者在岗时间有争议的，职业病诊断机构应当告知当事人依法向用人单位所在地的劳动人事争议仲裁委员会申请仲裁。  **第二十四条** 职业病诊断机构进行职业病诊断时，应当书面通知劳动者所在的用人单位提供其掌握的本办法第二十一条规定的职业病诊断资料，用人单位应当在接到通知后的十日内如实提供。  **第二十五条** 用人单位未在规定时间内提供职业病诊断所需要资料的，职业病诊断机构可以依法提请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督促用人单位提供。  **第二十六条** 劳动者对用人单位提供的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检测结果等资料有异议，或者因劳动者的用人单位解散、破产，无用人单位提供上述资料的，职业病诊断机构应当依法提请用人单位所在地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进行调查。  职业病诊断机构在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作出调查结论或者判定前应当中止职业病诊断。  **第二十七条** 职业病诊断机构需要了解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情况时，可以对工作场所进行现场调查，也可以依法提请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组织现场调查。  **第二十八条** 经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督促，用人单位仍不提供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检测结果、职业健康监护档案等资料或者提供资料不全的，职业病诊断机构应当结合劳动者的临床表现、辅助检查结果和劳动者的职业史、职业病危害接触史，并参考劳动者自述、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提供的日常监督检查信息等，作出职业病诊断结论。仍不能作出职业病诊断的，应当提出相关医学意见或者建议。  **第二十九条** 职业病诊断机构在进行职业病诊断时，应当组织三名以上单数职业病诊断医师进行集体诊断。  职业病诊断医师应当独立分析、判断、提出诊断意见，任何单位和个人无权干预。  **第三十条** 职业病诊断机构在进行职业病诊断时，诊断医师对诊断结论有意见分歧的，应当根据半数以上诊断医师的一致意见形成诊断结论，对不同意见应当如实记录。参加诊断的职业病诊断医师不得弃权。  **第三十一条** 职业病诊断机构可以根据诊断需要，聘请其他单位职业病诊断医师参加诊断。必要时，可以邀请相关专业专家提供咨询意见。  **第三十二条** 职业病诊断机构作出职业病诊断结论后，应当出具职业病诊断证明书。  职业病诊断证明书应当包括以下内容：  （一）劳动者、用人单位基本信息；  （二）诊断结论。确诊为职业病的，应当载明职业病的名称、程度（期别）、处理意见；  （三）诊断时间。  职业病诊断证明书应当由参加诊断的医师共同签署，并经职业病诊断机构审核盖章。  职业病诊断证明书一式三份，劳动者、用人单位各一份，诊断机构存档一份。  职业病诊断证明书的格式由卫生部统一规定。  **第三十三条** 职业病诊断机构应当建立职业病诊断档案并永久保存，档案应当包括：  （一）职业病诊断证明书；  （二）职业病诊断过程记录，包括参加诊断的人员、时间、地点、讨论内容及诊断结论；  （三）用人单位、劳动者和相关部门、机构提交的有关资料；  （四）临床检查与实验室检验等资料；  （五）与诊断有关的其他资料。  **第三十四条** 职业病诊断机构发现职业病病人或者疑似职业病病人时，应当及时向所在地卫生行政部门和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报告。  确诊为职业病的，职业病诊断机构可以根据需要，向相关监管部门、用人单位提出专业建议。  **第三十五条** 未取得职业病诊断资质的医疗卫生机构，在诊疗活动中怀疑劳动者健康损害可能与其所从事的职业有关时，应当及时告知劳动者到职业病诊断机构进行职业病诊断。  **第四章 鉴 定**  **第三十六条** 当事人对职业病诊断机构作出的职业病诊断结论有异议的，可以在接到职业病诊断证明书之日起三十日内，向职业病诊断机构所在地设区的市级卫生行政部门申请鉴定。  设区的市级职业病诊断鉴定委员会负责职业病诊断争议的首次鉴定。  当事人对设区的市级职业病鉴定结论不服的，可以在接到鉴定书之日起十五日内，向原鉴定组织所在地省级卫生行政部门申请再鉴定。  职业病鉴定实行两级鉴定制，省级职业病鉴定结论为最终鉴定。  **第三十七条** 卫生行政部门可以指定办事机构，具体承担职业病鉴定的组织和日常性工作。职业病鉴定办事机构的职责是：  （一）接受当事人申请；  （二）组织当事人或者接受当事人委托抽取职业病鉴定专家；  （三）组织职业病鉴定会议，负责会议记录、职业病鉴定相关文书的收发及其他事务性工作；  （四）建立并管理职业病鉴定档案；  （五）承担卫生行政部门委托的有关职业病鉴定的其他工作。  职业病诊断机构不能作为职业病鉴定办事机构。  **第三十八条** 设区的市级以上地方卫生行政部门应当向社会公布本行政区域内依法承担职业病鉴定工作的办事机构的名称、工作时间、地点和鉴定工作程序。  **第三十九条** 省级卫生行政部门应当设立职业病鉴定专家库（以下简称专家库），并根据实际工作需要及时调整其成员。专家库可以按照专业类别进行分组。  **第四十条** 专家库应当以取得各类职业病诊断资格的医师为主要成员，吸收临床相关学科、职业卫生、放射卫生等相关专业的专家组成。专家应当具备下列条件：  （一）具有良好的业务素质和职业道德；  （二）具有相关专业的高级专业技术职务任职资格；  （三）熟悉职业病防治法律法规和职业病诊断标准；  （四）身体健康，能够胜任职业病鉴定工作。  **第四十一条** 参加职业病鉴定的专家，应当由申请鉴定的当事人或者当事人委托的职业病鉴定办事机构从专家库中按照专业类别以随机抽取的方式确定。抽取的专家组成职业病鉴定专家组（以下简称专家组）。  经当事人同意，职业病鉴定办事机构可以根据鉴定需要聘请本省、自治区、直辖市以外的相关专业专家作为专家组成员，并有表决权。  **第四十二条** 专家组人数为五人以上单数，其中相关专业职业病诊断医师应当为本次专家人数的半数以上。疑难病例应当增加专家组人数，充分听取意见。专家组设组长一名，由专家组成员推举产生。  职业病鉴定会议由专家组组长主持。  **第四十三条** 参与职业病鉴定的专家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回避：  （一）是职业病鉴定当事人或者当事人近亲属的；  （二）已参加当事人职业病诊断或者首次鉴定的；  （三）与职业病鉴定当事人有利害关系的；  （四）与职业病鉴定当事人有其他关系，可能影响鉴定公正的。  **第四十四条** 当事人申请职业病鉴定时，应当提供以下资料：  （一）职业病鉴定申请书；  （二）职业病诊断证明书，申请省级鉴定的还应当提交市级职业病鉴定书；  （三）卫生行政部门要求提供的其他有关资料。  **第四十五条** 职业病鉴定办事机构应当自收到申请资料之日起五个工作日内完成资料审核，对资料齐全的发给受理通知书；资料不全的，应当书面通知当事人补充。资料补充齐全的，应当受理申请并组织鉴定。  职业病鉴定办事机构收到当事人鉴定申请之后，根据需要可以向原职业病诊断机构或者首次职业病鉴定的办事机构调阅有关的诊断、鉴定资料。原职业病诊断机构或者首次 职业病鉴定办事机构应当在接到通知之日起十五日内提交。  职业病鉴定办事机构应当在受理鉴定申请之日起六十日内组织鉴定、形成鉴定结论，并在鉴定结论形成后十五日内出具职业病鉴定书。  **第四十六条** 根据职业病鉴定工作需要，职业病鉴定办事机构可以向有关单位调取与职业病诊断、鉴定有关的资料，有关单位应当如实、及时提供。  专家组应当听取当事人的陈述和申辩，必要时可以组织进行医学检查。  需要了解被鉴定人的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情况时，职业病鉴定办事机构根据专家组的意见可以对工作场所进行现场调查，或者依法提请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组织现场调查。依法提请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组织现场调查的，在现场调查结论或者判定作出前，职业病鉴定应当中止。  职业病鉴定应当遵循客观、公正的原则，专家组进行职业病鉴定时，可以邀请有关单位人员旁听职业病鉴定会。所有参与职业病鉴定的人员应当依法保护被鉴定人的个人隐私。  **第四十七条** 专家组应当认真审阅鉴定资料，依照有关规定和职业病诊断标准，经充分合议后，根据专业知识独立进行鉴定。在事实清楚的基础上，进行综合分析，作出鉴定结论，并制作鉴定书。  鉴定结论应当经专家组三分之二以上成员通过。  **第四十八条** 职业病鉴定书应当包括以下内容：  （一）劳动者、用人单位的基本信息及鉴定事由；  （二）鉴定结论及其依据，如果为职业病，应当注明职业病名称、程度（期别）；  （三）鉴定时间。  鉴定书加盖职业病诊断鉴定委员会印章。  首次鉴定的职业病鉴定书一式四份，劳动者、用人单位、原诊断机构各一份，职业病鉴定办事机构存档一份；再次鉴定的职业病鉴定书一式五份，劳动者、用人单位、原诊断机构、首次职业病鉴定办事机构各一份，再次职业病鉴定办事机构存档一份。  职业病鉴定书的格式由卫生部统一规定。  **第四十九条** 职业病鉴定书应当于鉴定结论作出之日起二十日内由职业病鉴定办事机构送达当事人。  **第五十条** 鉴定结论与诊断结论或者首次鉴定结论不一致的，职业病鉴定办事机构应当及时向相关卫生行政部门和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报告。  **第五十一条** 职业病鉴定办事机构应当如实记录职业病鉴定过程，内容应当包括：  （一）专家组的组成；  （二）鉴定时间；  （三）鉴定所用资料；  （四）鉴定专家的发言及其鉴定意见；  （五）表决情况；  （六）经鉴定专家签字的鉴定结论；  （七）与鉴定有关的其他资料。  有当事人陈述和申辩的，应当如实记录。  鉴定结束后，鉴定记录应当随同职业病鉴定书一并由职业病鉴定办事机构存档，永久保存。  **第五章 监督管理**  **第五十二条** 县级以上地方卫生行政部门应当制定职业病诊断机构年度监督检查计划，定期对职业病诊断机构进行监督检查，检查内容包括：  （一）法律法规、标准的执行情况；  （二）规章制度建立情况；  （三）人员、岗位职责落实和培训等情况；  （四）职业病报告情况等。  省级卫生行政部门每年应当至少组织一次监督检查；设区的市级卫生行政部门每年应当至少组织一次监督检查并不定期抽查；县级卫生行政部门负责日常监督检查。  **第五十三条** 设区的市级以上地方卫生行政部门应当加强对职业病鉴定办事机构的监督管理，对职业病鉴定工作程序、制度落实情况及职业病报告等相关工作情况进行监督检查。  **第五十四条** 省级卫生行政部门负责对职业病诊断机构进行定期考核。  **第六章 法律责任**  **第五十五条** 医疗卫生机构未经批准擅自从事职业病诊断的，由县级以上地方卫生行政部门按照《职业病防治法》第八十条的规定进行处罚。  **第五十六条** 职业病诊断机构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卫生行政部门按照《职业病防治法》第八十一条的规定进行处罚：  （一）超出批准范围从事职业病诊断的；  （二）不按照《职业病防治法》规定履行法定职责的；  （三）出具虚假证明文件的。  **第五十七条** 职业病诊断机构未按照规定报告职业病、疑似职业病的，由县级以上地方卫生行政部门按照《职业病防治法》第七十五条的规定进行处罚。  **第五十八条** 职业病诊断机构违反本办法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卫生行政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给予警告，并可以根据情节轻重处以二万元以下的罚款：  （一）未建立职业病诊断管理制度；  （二）不按照规定向劳动者公开职业病诊断程序；  （三）泄露劳动者涉及个人隐私的有关信息、资料；  （四）其他违反本办法的行为。  **第五十九条** 职业病诊断鉴定委员会组成人员收受职业病诊断争议当事人的财物或者其他好处的，由省级卫生行政部门按照《职业病防治法》第八十二条的规定进行处罚。  **第六十条** 县级以上地方卫生行政部门及其工作人员未依法履行职责，按照《职业病防治法》第八十五条第二款的规定进行处理。  **第七章 附 则**  **第六十一条** 职业病诊断、鉴定的费用由用人单位承担。  **第六十二条** 本办法由卫生部解释。  **第六十三条** 本办法自2013年4月10日起施行。2002年3月28日卫生部公布的《职业病诊断与鉴定管理办法》同时废止。 |